

재단법인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정관

(제정) 2007.04.19.
(일부개정) 2012.01.26.
(일부개정) 2013.04.17.
(일부개정) 2015.06.17.
(일부개정) 2021.11.16.
(일부개정) 2024.05.2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재단은 민법 제32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 16조,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을 운영하며, 초·중·고 꿈나무 축구선수 육성 및 지역사회 축구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재단은 “재단법인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이라 칭하며 팀명은 “천안시티 에프씨”라 칭한다. 영문 표기시에는 Cheonan City Football Club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재단의 사무소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축구센터로 150(성정동, 천안축구센터)에 둔다.

제4조(사업) ①이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

1.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운영 및 지원
2. 유소년 축구 보급 및 육성을 통한 지역 축구 발전 사업 및 장학사업
3. 홍보(지역, 브랜드, 특산품 등)마케팅 사업
4.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봉사활동
5.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제1항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이 재단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다.

②이 재단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임 원

제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이 재단에 두는 임원의 정수와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1인
2. 이사는 8인 이상 15인 이내로 한다. (상임이사 포함)
3. 감사 2인

②제 1항 제 2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③재단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당연직 임원으로 한다.

1. 천안시장
2. 천안시 부시장
3. 천안시 체육담당국장
4. 천안도시공사 사장
5. 천안시 축구협회장
6. 천안시 체육담당과장

제7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선·해임 방법) ①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이사회 의결 후 취임한다. 다만, 당연직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이사장(구단주)은 천안시장으로 한다.

③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④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1.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사회통념상 현저한 부당행위
3. 재단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

제9조(임원선임의 제한) ①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는 제6조 이사 정수의 2분의 1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3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0조 (임원의 결격 사유) ①임원의 결격 사유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했던 사람으로 밝혀질 경우 해당 임원은 당연 사직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이 재단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②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재단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시 주무관청에 보고 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재단의 재산현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 날인 하는 일

제12조(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①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시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단, 이사장과 부시장 모두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2항의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이사정원의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지명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장 이 사 회

제13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14조(이사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재단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7.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나 법인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5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이사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③이사의 의사결정은 이사장을 포함한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16조(이사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까지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이사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④재단은 이사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이사과 감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필요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이사회 운영은 출석이사 중 최고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18조(서면결의) ①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이사회 의결제척사유) 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4장 재산과 회계

제20조(재산의 구분) ①이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 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이 재단의 재산은 [별표 1] 과 같다.

제21조(재산의 관리 등) ①재단의 기본재산을 매도·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30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재단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본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22조(재원) ①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수입, 사업수입 및 각호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지원금
2. 기업출연금
3. 기타수익금

②재단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회계년도) 이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24조(예산편성) 이 재단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5조(결산) 이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3월 이내에 이사회 승인을 얻는다.

제26조(임원의 보수) ①상임이사(단장)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임이사(단장)의 보수는 재단 보수규정을 따른다.

제27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장 사무부서 운영

제29조(사무국) ①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은 상임이사(단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상임이사(단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6장 보 칙

제30조(정관변경) 이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허가(승인)를 받아야 한다.

제31조(해산) 이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 (잔여재산 귀속) 재단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33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4조(보고·검사 등) ①재단의 경영상황 등에 관하여 시장 및 시의회가 보고·검사 등을 요청할 때에는 재단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본 재단이 설립등의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금지행위] 재단은 재단 명의 또는 이사장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1. 제정 2007. 4. 19
2. 개정 2012. 1. 26
3. 개정 2013. 4. 17
4. 개정 2015. 6. 17
5. 개정 2021. 11. 16
6. 개정 2024. 5. 21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이나 별도 이사회의 의결 등이 있는 경우는 그 결정에 따른다.

제3조(설립자의 초기의 임원 및 임기) 이 정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설립 당시의 임원 및 임기는 [별표 2]와 같다.

[별표 1]

법인설립 당시의 재산 목록

재산 구분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출 연 자	비 고
기본재산	현 금	1	500,000,000원	성 무 용 (천안시장)	법인설립 예 치 금
보통재산	현 금	1	700,000,000원	성 무 용 (천안시장)	운 영 비
		이 하	여 백		
합 계		2	1,200,000,000원		

[별표 2]

법인설립 당시의 임원 및 임기

직 위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임 기	비 고
대표 이사	성무용	431201-1*****	천안시 오룡동 116	2007. 4 ~ 2011. 3	당연직
이사	권녕학	500403-1*****	천안시 청수동 183 극동아파트 202-901	2007. 4 ~ 2011. 3	당연직
이사	김영길	481008-1*****	천안시 안서동 211 부경파크빌2차 109-1002	2007. 4 ~ 2011. 3	
이사	권오복	500312-1*****	천안시 원성동 488-23	2007. 4 ~ 2011. 3	당연직
이사	류제국	680703-1*****	천안시 목천읍 신계리 129	2007. 4 ~ 2011. 3	
이사	황광원	550901-1*****	천안시 성환읍 매주리 부영2차@ 205-602	2007. 4 ~ 2011. 3	
이사	강대연	550206-1*****	천안시 원성동 645-9 대성빌라 102호	2007. 4 ~ 2011. 3	
이사	유동석	630212-1*****	천안시 성정동 636-6	2007. 4 ~ 2011. 3	
이사	임문택	520403-1*****	천안시 안서동192-1 대림e편한세상201-1102	2007. 4 ~ 2011. 3	당연직
감사	김동준	590917-1*****	천안시 청수동 극동@ 104-304	2007. 4 ~ 2009. 3	
감사	정형교	551128-1*****	천안시 불당동788 한성필하우스 703-1103	2007. 4 ~ 2009. 3	당연직